

제344회 정례회  
2015.12.16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임병은 의원 등 7명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## 3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 권고 등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
-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지 개선을 위해 위탁교육과 단순시설 이용자를 구분하고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### 가. 자연학습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
- 청천면 송면리 → 화양로 1314-12번지

### 나.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준용하여 처리토록 함.

### 다. 관리·운영 수탁자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(안 제12조)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

### 라. 두 번 이상 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연장(안 제12조)

- 위탁기간 연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고, 두 번 이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토록 규정

### 마. 시설사용료 조정(별표)

- 연수비, 숙식비,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,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권고사항('14.12.8)

### □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

-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위법인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 위반임
- 위탁기간의 연장횟수를 조례에 명시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운영 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토록 할 것

### □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
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관련 조례 명시
- 이용료 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 소지 예방을 위해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,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준용

- 주요 개정내용은,

- 1) 안 제10조의2에서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에 있어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준용토록 규정하였고,
- 2) 안 제 12조에서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리·운영 수탁자를 '청소년단체 등'으로 한정하였음.
- 3) 또한 연수비와 단순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함.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2014년 건물 신축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안전관리 강화로 청소년 수련 지침의 수련활동 기준 인원이 감소(150명 이상 대규모 수련활동⇒100명 이하 소규모 테마형 활동)되어 운영상 적자가 지속적으로 있어, 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함은 필요한 조치로 여겨짐.

- 특히, 강당, 회의실 등 단순시설 사용료의 경우, 고등학생 이하의 별도 사용 수요가 거의 없고, 대부분 성인들이 사용하는 바, 금액을 현실화 시키는 데 문제가 없으며, 사용료 인상금액도 국립청소년수련원 및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 요금수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사용료 중 초·중·고교생이 주 대상인 연수비(위탁 교육)의 경우, 자연학습원 운영수지 안정화 측면의 걱정 인상을 검토와 더불어 공립시설로서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최소 비용만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현재 제시된 연수비 인상률은 평균 30% 가까이 인상된 금액으로, 국립청소년 수련원과 비교할 때, 15%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임.

• 국립청소년수련원 대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연수비(1박2일)

구분	국립청소년수련원(4곳)	충청북도자연학습원			
	<2015년 기준>	현행		인상안	증감률(%)
초등	35,100원	31,500원	→	41,000원	30%↑
중등	36,600원	33,100원	→	42,600원	29%↑
고등	37,800원	34,700원	→	44,200원	27%↑

• 충북 도 내 청소년수련시설(1박2일 기준)과 비교 시, 높은 편은 아니지만, 인근 괴산군 청소년수련원보다는 다소 높았음.

(단위 : 원)

화양수련원			보람원			괴산군청소년수련원			충주시청소년수련원		
초등	중등	고등	초등	중등	고등	초등	중등	고등	초등	중등	고등
48,000	49,000	50,000	48,000	49,500	50,500	40,500	41,500	42,500	46,500	47,000	47,500

• 또한, 경기도 소재 공립청소년수련시설과 비교 시, 인상된 연수비가 평균 45%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,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인상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※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: 초등(27,100원), 중등(29,600원), 고등(30,600원)

-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, 자연학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으로 법리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에 제시된 연수비 인상금액의 경우, 도 내 인근시설보다는 높지 않으나, 국립청소년수련원 및 타 지역 공립시설과 비교 시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음. 따라서 자연학습원이 공립시설인 점과 연수비 인상에 따른 도민부담 충격을 고려해 인상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